

제320회 임시회
2013.05.15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05.15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04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05월 0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05월 08일

(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노화)

가. 제안이유

「교육공무원법」(법률 제11527호, 2013.6.12.), 「지방공무원법」(법률 제11531호, 2013.6.12.) 개정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」(2013.6.12.예정)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, 직급

별 정원책정기준 및 단위기관별 정원의 일부를 개정하고, 지역교육청 위센터(Wee Center)의 전문상담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현행 지방공무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※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: 2,898명→3,115명

(지방공무원 기존 정원에 교육전문직 정원 217명 포함)

2)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(안 제3조제2항, 별표2)

가) 기능직: 6급 8%이내, 7급 20%이내, 8급 36%이내, 9급 36%이상

※ 현행기준: 6급 6%이내, 7급 15%이내, 8급 26%이내, 9급 53%이상

나) 교육전문직원: 장학관·교육연구관 30%이내, 장학사·교육연구사 70%이상

※ 현행비율(정원): 장학관·교육연구관 24.4%(53명), 장학사·교육연구사 75.6%(164명)

3)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안 제4조, 별표3)

가) 일반직 92명 증원: 1,553명→1,645명

(1) 4급 이상 2명¹⁾, 5급 이하 90명

나) 기능직 92명 감원: 1,324명→1,232명

(1)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△86명, 결원직렬 △6명

다)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217명 신설

(1)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 31명²⁾

(2)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186명

4) 지역교육청 위센터 한시정원(전문상담인력) 증원(안 제5조, 별표4)

가) 직급, 정원 및 존속기한: 교육행정8급 17명³⁾, 2016. 6.30.까지

1) 4급 정원 2명 책정 승인 : 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, 단재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

2) 4급 상당 이상 정원 31명 책정 승인 : (본청)국장·과장 7명, (직속)기관장·부서장 12명, (지역교육청)교육장·국장 12명

3) 한시정원 책정 승인: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-6873(2012.12.14.)

나) 해당 정원은 계약직공무원 “라”급으로 채용하여 존속기한까지 운용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라기복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채정기준,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, 지역교육청 위센터 한시정원 등을 개정한 것으로,
- 안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교육전문직 정원 217명을 포함한 3,115명으로 조정하고,
- 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<표 1>과 같이 전국 시·도교육청과 형평을 맞춰 상위직급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채정기준을 개정하고,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신설.
- 안 제4조 별표3은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92명의 기능직 정원 감원과 이에 따른 일반직 92명 정원 증원 및 교육전문직원 217명의 기관별 정원 신설.
- 안 제5조 별표4에 지역교육청 위센터 전문상담인력 17명의 한시정원 증원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표1>

전국 시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(기준: 2013. 4월 정원 조례)

직급	전남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경기	강원	경북	경남	전북	충남	울산	대전	충북	
기능6급	9%	8%										6.5%	6%	6%	8%	
기능7급	20%										16%	15%	15%	20%		
기능8급	36%										26%	31%	39%	26%	36%	
기능9급	35%	36%										46%	46.5%	40%	53%	36%

※ 상위직급 비율 상위 순이며 세종과 제주교육청은 제외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
비 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.5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
비 율	8%이내	20%이내	36%이내	36%이상

3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-	100%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
비 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

5. 교육전문직원
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
비 율	30%이내	70%이상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단위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1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1,645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1,621	-			
기능직 계	1,232	-			
6급이하 소계	1,232	-			
연구직 계	7	-			
연구사 소계	7	-			
별정직 계	13	-			
5급이하 소계	13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17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1		19	12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86	-		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
				1		
		교육행정	5급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	
			6급			
			7급			
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2	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5조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”를 “제15조, 제15조의2, 제16조, 제18조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2,898명”을 “3,1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891명”을 “2,891명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: 217명

제3조의 제목 “(정원 책정기준)”을 “(정원책정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”을 “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“지방공무원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”을 “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부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
비율	53%이상	46.5%이내	0.5%이내

비고: 일반직에는 연구직의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
비 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.5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
비 율	8%이내	20%이내	36%이내	36%이상

3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-	100%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
비 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

5. 교육전문직원
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
비 율	30%이내	70%이상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단위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1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1,645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1,621	-			
기능직 계	1,232	-			
6급이하 소계	1,232	-			
연구직 계	7	-			
연구사 소계	7	-			
별정직 계	13	-			
5급이하 소계	13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17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1		19	12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86	-		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
			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	교육행정	5급	1		
			6급	1		
			7급	1		
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2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, 제15조의2, 제16조, 제18조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898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891명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3,115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: <u>2,891명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</u></p> <p>3. <u>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: 217명</u></p>
<p>제3조(정원 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	<p>제3조(정원 책정기준) ① <u>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</u>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[별표 1]</p> <p>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일반직</th> <th>기능직</th> <th>별정직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53%이상</td> <td>46.5%이내</td> <td>0.5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※ 연구직의 정원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한다.</p> <p>[별표 2]</p> <p>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4급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·9급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2%이내</td> <td>8.5%이내</td> <td>33%이내</td> <td>44%이내</td> <td>125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2. 기능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능6급</th> <th>기능7급</th> <th>기능8급</th> <th>기능9급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6%이내</td> <td>15%이내</td> <td>26%이내</td> <td>53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3. 연구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연구관</th> <th>연구사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/tr> </table> <p>4.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5급상당</th> <th>6급상당</th> <th>7급상당</th> <th>8급상당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1%이내</td> <td>16%이내</td> <td>47%이내</td> <td>6%이상</td> </tr> </table>	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	비율	53%이상	46.5%이내	0.5%이내	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비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5%이상	구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	비율	6%이내	15%이내	26%이내	53%이상	구분	연구관	연구사	비율	-	100%	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비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	<p>② 지방공무원의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----- ----- -----.</p> <p>[별표 1]</p> <p>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일반직</th> <th>기능직</th> <th>별정직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53%이상</td> <td>46.5%이내</td> <td>0.5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: 일반직에는 연구직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[별표 2]</p> <p>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4급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·9급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2%이내</td> <td>8.5%이내</td> <td>33%이내</td> <td>44%이내</td> <td>125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2. 기능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능6급</th> <th>기능7급</th> <th>기능8급</th> <th>기능9급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8%이내</td> <td>20%이내</td> <td>36%이내</td> <td>36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3. 연구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연구관</th> <th>연구사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/tr> </table> <p>4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5급상당</th> <th>6급상당</th> <th>7급상당</th> <th>8급상당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1%이내</td> <td>16%이내</td> <td>47%이내</td> <td>6%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5. 교육전문직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장학관·교육연구관</th> <th>장학사·교육연구사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30%이내</td> <td>70%이상</td> </tr> </table>	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	비율	53%이상	46.5%이내	0.5%이내	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비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5%이상	구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	비율	8%이내	20%이내	36%이내	36%이상	구분	연구관	연구사	비율	-	100%	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비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	구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	비율	30%이내	70%이상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53%이상	46.5%이내	0.5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5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6%이내	15%이내	26%이내	53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연구관	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-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53%이상	46.5%이내	0.5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5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8%이내	20%이내	36%이내	36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연구관	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-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30%이내	70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
[별표 3]					
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2,898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1,553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7	1	15	1	
5급이하 소계	1,531	-			
기능직 계	1,324	-			
6급이하 소계	1,324	-			
연구직 계	7	-			
연구사 소계	7	-			
별정직 계	13	-			
5급이하 소계	13	-			

[별표 4]						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						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빙피후학교지원단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
			1			
		교육행정	5급	1	2015.8.31.	
			6급	1		
		7급	1			
합계				5		

개 정 안					
[별표 3]					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단위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1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1,645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1,621	-			
기능직 계	1,232	-			
6급이하 소계	1,232	-			
연구직 계	7	-			
연구사 소계	7	-			
별정직 계	13	-			
5급이하 소계	13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17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86	-			

[별표 4]						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						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빙피후학교지원단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
			1			
		교육행정	5급	1	2015.8.31.	
			6급	1		
		7급	1			
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/We the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2		

관계법령 발췌

□ 교육공무원법 [시행 2013.6.12.][법률 제11527호, 2012.12.11.]

제58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)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 [시행 2013.6.12.][법률 제11531호, 2012.12.11.]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③ ~ ④. (생략)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

[시행 2013.6.12.예정][대통령령 제 호, 2013.5.3.예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(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,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(정원 감축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,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 이상
2. 지역교육청의 국장 이상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제16조(별정직 정원) ① 별정직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·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, 그 수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(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-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-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역교육청 위센터(Wee Center)의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한시정원을 책정
- 한시정원 책정승인: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-6873(2012.12.14.)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한시정원 17명(교육행정8급) 책정에 따른 인건비

3. 관련조문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

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1) 한시정원: 교육행정8급 17명
- 2) 존속기한: 2013. 7. 1.예정 ~ 2016. 6. 30.(3년)

※ 해당 정원은 계약직공무원("라"급) 전문상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존속기한까지 운용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인건비 추계		연도별 인건비 추계				
산출기초 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2조)	계	2013년 (6/12)	2014년 (12/12)	2015년 (12/12)	2016년 (6/12)	합계
1. 전임계약직공무원 “라”급	624,872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가. 연봉 31,351,000원 × 17명 =	532,967	266,484	550,555	568,724	293,746	1,679,509
나. 법정부담금 532,967,000원 × 17.244% =	91,905	45,953	94,938	98,071	50,654	289,616

※ 2014년 이후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3.3%을 적용하였으며, 존속기한을 감안하여 2013년과 2016년의 인건비는 각각 6개월분만 추계

다. 채용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※ 2013년 이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까지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에 포함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행정과장 이경우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계
세 입	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보통교부금	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세 출	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지방공무원인건비		266,484	550,555	568,724	293,746	1,679,509
재원 조달	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의존 재원	소 계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312,437	645,493	666,795	344,400	1,969,125
	특별교부금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자체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기타(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)						

※ 2014년 이후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3.3%을 적용하였으며, 존속기한을 감안하여 2013년
과 2016년의 인건비는 각각 6개월분만 추계